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2. 효력발생일 : 2020.08.12

3. 변경 사유 :

- 종류 S(P)1, S(P)2 수익증권 신설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19.12.30 기준	2020.05.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06.21 기준	2020.06.21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07.03 기준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19.12.30 기준	2020.05.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06.24 기준	2020.06.24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07.03 기준
제 1 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0.04.27 기준	2020.07.03 기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②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일반위험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에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29%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5 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6.56% 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4 등급(보통 위험) 으로 분류됩니다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회사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19.06.24 기준 <신설>	2020.06.24 기준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9 기(2019.06.24) 기준	제 10 기(2020.06.24) 기준
제 4 부.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8.12.31 기준	2019.12.31 기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 규모	2019.10.25 기준	2020.07.03 기준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생략> 9."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0.<생략>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현행과 동일> 9. <삭제> 10.<현행과 동일>
제 3 조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p>(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13.<생략></p> <p>14.<신설></p> <p>15.<신설></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13.<현행과 동일></p> <p>14. Class S(P)1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15. Class S(P)2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제 9 조 (수익권의 분할)</p>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p>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p>
<p>제 10 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13.<생략></p> <p>14.<신설></p> <p>15.<신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13.<현행과 동일></p> <p>14. Class S(P)1 수익증권</p> <p>15. Class S(P)2 수익증권</p>
<p>제 12 조 (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p>

	<p>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동일></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①~② <생략></p> <p>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구별로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3 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①~② <생략></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37 조 (보수)</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p>

	<p>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생략> 14.<신설> 15.<신설></p>	<p>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현행과 동일> 14. Class S(P)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1000분의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2.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1000분의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15 15. Class S(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1000분의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2.2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0.15</p>
<p>제 42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③<생략> ④~⑥<신설></p>	<p>①~③<현행과 동일> 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p> <p>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p> <p>⑤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변경시행일 전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대상금액 :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p>

		<p>를 급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p> <p>2.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⑥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제4항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제 43 조 (투자신탁의 해지)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제 45 조 (투자신탁의 합병)	<p>①~③ <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①~③ <현행과 동일></p> <p>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p>
제 47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p>①~⑧ <생략></p> <p>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p>	<p>①~⑧ <현행과 동일></p> <p>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p>

	<p>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	---	--